

기업윤리 브리프스

12

전문가요청

기업이여, 제3자 리스크를 넘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자!



김재훈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질문 1

'제3자 리스크'란 무엇이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무엇인가?

비즈니스 측면에서 '제3자'란 공급망, 유통 및 판매를 대행하는 업체, 에이전트, 협력파트너 등 생산·유통·판매에서 기업내부 직원을 제외한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3자 리스크'란 제3자가 기업을 내·외부 위협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제3자를 통한 뇌물제공과 부정부패, 벤더나 아웃소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대노예노동, 제3자가 저지르는 환경범죄, 콩고나 우간다 등에서 전쟁 및 노동착취를 통해 생산되는 분쟁광물 규제조항 위반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 수 있다. 공급망 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현대노예노동을 강요하거나 정부계약을 따내려고 에이전트를 통해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회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평판과 이윤추구의 측면에서 기업조직 자체를 망가뜨린다.

2010년 12월 존슨앤존슨의 헬스 케어 자회사 맥닐은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소홀로 곤혹을 치렀다. 당시 로레이즈(Roloids)라는 제산제에서 금속 및 나무 성분이 발견됐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이어져 해당 제품 수백만 통을 리콜했다. 맥닐은 "제3자가 제조한 제품을 납품받은 것이어서 조사해보겠다"고 면피성 발언을 공식입장이라고 내놓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맥닐이 제품생산을 제3자에게 아웃소싱했지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 후 맥닐 여러 제품들에 대한 청결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고, 제3자 리스크로 실추된 소비자들의 평판을 만회하기가 쉽지 않았다.

최근 SNS를 통한 기업의 상품홍보와 마케팅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업무는 외부 에이전시에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세한 에이전시는 사진, 영상, 음악 등의 저작권이나 상표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행사로 인한 리스크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은 제3자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은 이들 리스크의 더욱 세심한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질문 2

'제3자 리스크' 관리전략을 위한 핵심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제3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제3자에 대한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사를 해야 한다. 기업문화나 사업관행이 어떤지, 과거에 부패스캔들이 일어난 적은 없는지, 법적인 분쟁이나 부정적 언론보도 사례가 없었는지, 계약위반사례의 발생 유무, 기업을 둘러싼 주변의 평판 등 몇 가지 항목을 고려하여 제3자 관계설정의 자격유무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 제3자 개인이나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재무 및 신용, 개인정보보호, 기술보안, 소비자의 평판 등이 만족할만하다면 계약체결을 위해 해당 기업에게 문서화된 형태로 여러 자료를 요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기업지배구조 현황 및 연계된 주변 기업들의 평판 등을 심층적으로 내부 감사에 준하여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제3자에게 확대적용하고, 필요 시 비즈니스 정보를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3자와 공유해야 한다. 제3자는 기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적절한 컴플라이언스 및 기타 노력들이 잘 통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애플은 자사의 공급망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여 고용수수료를 챙긴 제3자를 발견하고 '현대노예노동'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는 '현대노예법안'(Modern Slavery Bill)의 결과로 기업들에게 노예노동보고서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공급망에서 현대노예노동의 근절을 기대하고 있다. 제3자 리스크를 전략적으로 잘 관리한다면 오히려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최근 기업업무가 단일 기업 내에서 완결되지 않고 생산, 유통, 판매, 홍보 등의 전체 업무흐름 가운데 일부는 어떤 형태로든 아웃소싱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지만, 그 관리에 대한 책임과 평판은 고스란히 해당 기업의 몫이라는 의미이다.



윤경萬里

:: 국 내

1. 현대카드 리빙서비스 불완전 판매로 징계

10월 27일, 금융감독원은 리빙서비스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현대카드에 기관경고를 의결하고 관련직원 11명에게 감봉·견책 등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지시했다. 리빙서비스란 결제대금 일부를 이월하는 서비스로 이월대금에는 최고 20%대의 고금리가 적용된다. 실태조사 결과 이월된 금액에 적용되는 고금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에서는 자체 심사를 통해 피해 고객에게 피해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참고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767688.htm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7/0200000000AKR20161027168300002.HTML?input=1179m>

2. 의료계 리베이트 처벌 강화, 그러나 의사는?



11월16일 국회는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기준을 현행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으로,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의

형량 기준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만일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쌍벌제'가 적용되는 리베이트 특성상 약사,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의 형량만 강화되는 셈이다.

참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1/0200000000AKR2016110119025200017.HTML?input=1179m>
<http://www.kpnews.co.kr/article/show.asp?idx=178794&table=article&category=C>

3. 노동부, 사회적 기업 창업팀 30곳 지정

10월26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처음으로 우수창업팀 30곳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30곳 중 22곳은 청년사업가들이 운영하는 곳이며, 일자리 빈곤퇴치, 우간다 아동의 수질환경 개선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연간 5천만 원의 사업비, 월 250만 원 수준의 전문 인력 인건비 일부, 최저임금 수준 일반인력 인건비 등이 지원된다.

참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6/0200000000AKR20161026081000004.HTML?input=1179m>
<http://news1.kr/articles/?2813111>

:: 해 외

1. 난소암 유발 존슨앤존슨에 802억원 '징벌적 배상' 판결



10월28일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은 존슨앤존슨 베이비파우더를 40년간 사용하다가 난소암에 걸렸다고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데버러 지아네 키니(63세)에게 7000만달러(약 802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비자 단체는 20년 전부터 탈크성분의 발암 가능성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존슨앤존슨은 난소암 투병환자들에게 위로를 건네면서도 베이비파우더는 안전성이 보장된 제품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실제로 존슨앤존슨 본사가 있는 뉴저지법원은 난소암 관련 소송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참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31/2016103100192.html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74503>

2. 롤스로이스, 부정거래 의혹

10월31일 영국 BBC와 가디언은 영국의 항공엔진제조업체 롤스로이스가 뇌물제공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인도의 무기중개상 추드리와 연관된 기업에게 돈을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의혹의 핵심은 롤스로이스가 추드리를 통해 호크기 계약 당시 주요 협상이었던 피터 진저에게 리베이트를 주어 인도정부와의 계약을 따냈다는 것이다. 의혹의 핵심은 국방사업 계약을 따내려고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인도에서 롤스로이스가 리베이트를 제공했느냐다. 이 사업으로 4억 파운드(5600억원)를 거둬들인 당사자들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참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1/0200000000AKR201611011052300009.HTML?input=1195m>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760871>

3. 시리아 난민 청소년, 자라·망고 터키공장서 착취당해

유럽 대형 의류·유통업체 터키공장에서 청소년이 포함된 시리아 난민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망고와 자라에 청바지를 납품하는 터키공장에서도 일하는 시리아 난민 중 가장 어린 노동자는 15세였고 터키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시간당 1파운드(약 1385원)를 조금 넘는 임금을 받고 하루 12시간 이상 영국에 보내는 옷을 다림질하고 있었다. 그리고 청바지 표백을 위해 유독 화학물질을 뿌리는 일을 하지만 얼굴에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시리아 난민을 착취한다고 지목된 기업들은 앞으로 터키공장의 인력 공급망을 면밀히 감시하여 난민이나 아동노동착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4/0200000000AKR20161024179500009.HTML?from=search>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03383>

행사소개

국내행사 | 국외행사

대한민국 청렴컨퍼런스

UN세계반부패의 날 기념식,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대표자 회의 (45개 단체), 청탁금지법 토론회 등 개최

- 주최 :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국민권익위원회
- 일시 : 2016년 12월 9일
- 장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참여 :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

제2회 '컴플라이언스경영 전문가(CCP)' 워크숍

'청탁금지법 Q&A' 및 '컴플라이언스 KP(지표) 개발(성과관리)' 등을 주제로 하는 CCP 워크숍

- 주최 : 시장경제교육원
- 일시 : 2016년 12월 9일
- 장소 : 서울 공정경쟁연합회

Basic Compliance & Ethics Academy Dubai (두바이 컴플라이언스 & 윤리 기초 아카데미)

3박4일 일정으로 컴플라이언스의 기준, 정책, 절차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지식을 얻는 교육프로그램

- 주최 : Society of Corporate Compliance and Ethics
- 일시 : 2017년 1월 8일 ~ 1월 11일
- 장소 : Dubai, UAE

Manage and Communicate with Vendors and Suppliers (벤더 및 공급업체의 관리와 소통)

공급 파트너가 기업시민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게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 주최 : Boston College Center for Corporate Citizenship
- 일시 : 2017년 1월 19일
- 장소 : Scottsdale, AZ

윤리연구소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선택, '스피드 팩토리'

세계화 과정에서 진행된 다국적 기업의 아웃소싱이나 글로벌 공급 사슬은 세계적인 불평등을 유지 또는 심화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등 세계 3대 스포츠 브랜드는 이러한 설명을 돕는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값싼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부가 최상위에 있는 다국적 기업에 흘러가는 구조로 짜여 있고, 개별 국가는 이 공급사슬에 들어가기 위해 사실상 최저임금의 하향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제3자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회피한 브랜드 윤리 >>>

1990년대 본사가 디자인과 마케팅만 책임지고 생산은 아웃소싱하는 나이키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점차 일반화되어갔다. 아웃소싱으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제3자와 비교적 자유롭게 계약 또는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생산라인을 가진 기업에 비해 유연하고 가격 경쟁력이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96년 미국 '라이프'지에 12살 파키스탄 소년이 나이키 축구공을 바느질하는 사진이 실리면서 아동 노동문제로 언론의 집중공격을 받게 됐고, 2000년 하청업체에서 아동이 월급 50유로(약 6만2000원)에 하루 15시간씩 노동한 사실이 밝혀져 엄청난 스캔들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나이키 본사 경영진은 하청업체의 잘못일 뿐이라고 발뺌하다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공급망 윤리지침을 마련하였고 하청업체들에 신발생산 시 18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갔다.

저임금의 유혹에 무력해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브랜드윤리운동의 조사에 따르면, 100유로짜리 나이키 신발을 만든 노동자가 받는 몫은 단 2%에 불과하다. 반면 유명 스포츠 브랜드가 유럽의 10대 프로축구단에 후원하는 돈은 2015년 기준 4억 유로(약 5천억 원)이고, 이는 인도네시아 노동자 31만 명의 '최저임금'과 맞먹는다.

아디다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밝힌 홍보물에서 중국과 동남아에 있는 40만 종업원의 인권상황개선과 인권준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실제 마케팅 및 스폰서 비용이 늘면 안정적 부가가치창출을 위해 원가절감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전략적 선택은 항상 광고와 스폰서, 배당금이 우선이었고 공급망의 노동조건과 임금현실화는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아디다스의 귀환, '스피드 팩토리' >>>

1993년 모든 운동화 공장을 해외이전한지 24년 만에 아디다스가 독일로 생산라인을 유턴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아시아의 생산라인 철수를 선언한 아디다스가 최근 로봇 생산공장 '스피드 팩토리'를 안스바흐에 설립해 내년 정상 가동을 목표로 시제품을 생산했다. 스피드 팩토리는 로봇을 이용해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생산하여 공급한다는 개념으로 만든 공장이다. 스피드 팩토리의 장점은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고 소비자들이 있는 곳 어디나 공장건설이 가능해 물류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문생산으로 재고의 위험이 없고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할 수 있다. 스피드 팩토리는 독일 '산업4.0'의 구체적 사례에 해당된다. 산업4.0의 핵심은 제조업과 ICT를 결합시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즉, 인공지능(AI)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스피드 팩토리에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에 딱 맞는 것만 소량다품종생산을 하지만, 속도와 효율성 측면에서는 표준화된 대량생산과 동일하다. 이는 제조업의 기존질서를 허물며 적어도 생산 과정에서 노동착취와 같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다.

스피드 팩토리 시대의 과제 >>>



스피드 팩토리 시대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찮게 들린다. 고용 문제해결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공유가치창출(CSV)과 엇박자를 보일 수 있다.

지난 7월 국제노동기구(ILO)는 로봇생산시스템이 확산되면 20년 안에 아시아 노동자 1억 37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이 숫자는 타이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임금노동자 56%에 이르는 규모이다. 저임금의 노동착취를 이유로 나이키와 아디다스 제품을 반대하던 소비자운동도 이슈를 바꿔야할 때가 된 것이다. 기업윤리가 단순한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에 그쳐서는 안되며 기업시민으로서 모두가 상생하는 근본적 대안을 찾아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사회적 책임도 비단 소비자의 평판과 만족도에 좌우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시대의 공유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윤리경영 스테디

제3자 리스크 관리 보고서



2016년 톰슨로이터는 구매 및 조달, 컴플라이언스, 법률 전문가 등 조직 내 제3자리스크 관리

를 책임지는 1132명의 전문가들을 설문조사하여 제3자 리스크 관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사례의 90%가 제3자와 관련된 내용일 정도로 제3자 리스크 관리의 기업윤리경영에서 가장 큰 도전이다. 이 보고서는 기업이 제3자 리스크 관리의 구체적 실천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지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제3자 리스크의 안전지대는 없다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기업들은 보다 적은 자원으로 신속하게 더 많은 성과를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비핵심부문은 아웃소싱하게 되고, 낯선 지역으로 영업망과 공급망이 확대된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74%는 제3자 관계가 기업을 더욱 유연하고 경쟁력 있게 만든다고 말한다. 나아가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 새로운 사업이 성공하려면 규제와 관련된 리스크를 감수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5%나 존재한다. 이러한 생각은 절반 가까이가 제3자 리스크와 관련해 전 지역이 고위험 또는 중간위험 지대라고 인식하는 것의 반증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지구상 어디에도 제3자 리스크의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이다. 영국과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제3자 리스크 관리를 둘러싼 환경

2016년 1분기에 FCPA 판결로 벌금 및 과징금이 기업에게 거의 5억 달러나 부과됐다. 기업은 법적인 처벌뿐 아니라, 평판 리스크로 인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기업 시장 가치의 25% 이상이 직접적인 평판에 달려있다고 한다. 기업이 제3자 실사를 꼼꼼히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평판 리스크 때문이다. 자신들의 잘못뿐 아니라 제3자의 위법행위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 그리고 제3자 리스크는 다음 6가지 압력에 의해 관리환경이 형성된다. △공급망 증가와 제3자 리스크 규제, 지속가능성 향상 요구 △컴플라이언스 부재에 따른 더 높은 벌금

△실사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이슈를 주도하는 소비자 윤리 △주주가치와 투자자 만족 △시민사회와 NGO 압력 등은 철저한 제3자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제3자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제3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밀실사는 62%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3자가 다른 공급업체에게 외주를 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응답자도 무려 61%에 달했고 56%의 응답자는 규정을 위반해도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강력한 규제 법안이 마련된 미국(61%)과 영국(56%)에서도 이러한 발언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련법규 위반 시 응답자의 11%만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15%는 기록만 남기고 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일반적으로 규제와 컴플라이언스(55%), 기업의 평판보호(53%) 때문에 제3자를 실사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리스크들 가운데 새로운 리스크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제3자는 소유구조나 작업장 조직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제3자 리스크의 관리주체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본부라는 응답이 2/3 이상이었다. 하지만 중앙 집중화된 리스크 관리프로그램은 지역특성의 독특한 리스크를 간과하는 위험성도 있다.

제3자 리스크로부터 안전한 미래 설계

자료부재(41%)와 자원제약(38%)이 제3자 리스크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 최고위층의 지원 없이는 제3자 리스크 관리가 힘들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제3자 리스크는 표면에 고집어내기 전에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1차 공급업체를 넘어 공급사슬 전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제3자 기업만 조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모회사, 실질적인 소유자, 자회사나 임원진 모두를 살펴보아야 한다. 조사결과 실질적인 소유자에 대한 확인은 38%의 기업에서 이루어졌고, 임원진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27%에 불과했다. 제3자 관계는 비용을 줄이고 자원을 최적화함으로써 기업성공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오히려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도 있다. 응답자의 71%는 리스크의 증가와 함께 규제당국이 제공하는 정보도 동시에 늘어날 것으로 보았고 제3자 리스크 관리에 사용될 시간과 자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 비율도 3/4이나 되었다. 제3자 리스크가 제대로 관리된다면 공급사슬 전체가 투명하게 작동함으로써 수 십, 수 백 개 기업의 윤리경영을 확립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윤리 일문일답

— 問 — 答



Q 제3자 리스크에서 말하는 제3자는 누구죠?

A 제3자 리스크에서 말하는 '제3자'란 당사자인 기업을 제외한 모두를 이야기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기업과 사업상 관계를 맺은 모든 조직'을 의미하며, 이때 계약 유무나 직간접성은 무관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회사와 계약한 A사 뿐만 아니라 이 사업과 관련하여 A사와 계약한 B사 역시 우리의 제3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업체, 부품업체, 용역업체, 유통업체, 중개업체 대행업체나 파견직 직원, 법률 대리인, 컨설턴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해당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3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렇다면 가장 주의해야 할 제3자는 누구일까요?

〈윤리경영 스테디〉에서 다룬 톰슨 로이터의 자료에서는 이 제3자에 대해 '공급망에 관련되거나 공급자/배급자/에이전트 또는 파트너처럼 조직을 대신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3자 리스크의 대부분이 공급망에 있는 기업 또는 단체로 인해 발생합니다.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제공 받은 재화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그 과정에 비윤리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윤리 **it** 수다

윤리경영, 우리만 잘하면 된다?

윤리경영을 위해 내부 시스템과 직원교육에 힘쓰고 중요 협력업체에게까지 윤리교육을 제공하는 회사라도 비윤리문제에 휘말릴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윤리적 기준이 높은 기업에게도 '제3자'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노동

제3자 리스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노동문제이다. 노동에 아동들이 동원되거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노동자가 일하는 가운데, 기본적인 인권이 착취당하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IT하청업체, 폭스콘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애플의 제품을 생산하는 폭스콘 공장의 노동자 11명이 사망했다. 폭스콘의 월평균 100시간에 달하는 근무강도, 군대식 기숙사,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근무환경, 그리고 처참한 임금은 이미 악명이 자자했다.



일각에서는 애플의 제품에 대한 공급이 늘면서 악명 높던 폭스콘 노동강도가 살인적인 수준까지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다. 애플은 뒤늦게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고 근무원칙을 제시했지만, 2014년까지도 폭스콘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담배농장의 아이를 구하라

2014년, 글로벌 담배제조회사 필립모리스에 국제인권단체 'HRW(휴먼라이츠워치)'가 방문했다. HRW는 미국 담배 농장의 아동노동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최저 7살의 어린이들이 담배 농장의 장시간 노동에 동원되어 '담뱃잎 농부 병'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필립모리스는 담배 재배 과정에서 어린이 노동착취와 같은 관행들을 근절시키기 위한 많은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블러드 콜탄

2012년, IBM, 델, HP 등 미국의 IT기업들은 다급하게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원산지를 확인하고 나섰다. 미국에서 분쟁광물 규제를 위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분쟁광물은 분쟁국가에서 비정상적으로 채취·판매되는 광물로, 그 중 IT기기에 빠지지 않는 콜탄이 대표적이다. 분쟁광물은 지역주민, 포로 등의 강제노동으로 채취되며, 판매금은 다시 전쟁자금에 활용된다.

법안의 시행으로 IT기업 중에서도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원산지나 뒷이야기에 무관심했던 기업일수록 더 큰 변화와 타격을 감내해야 했다.

정보보안

제3자에 의한 윤리적 리스크는 하청이나 재하청, 파견 등이 많은 곳에서 발생하기 쉽다. 그리고 정보보안 관련 업무 역시 전문용역이나 파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카드3사 정보유출사건

2014년 1월, 세 개의 카드사에서 1억 건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정보유출이 발생했다. 카드사들이 사용하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개발한 박모씨는 개발 책임자로서 카드사에게 고객의 자료를 제공 받을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본래 가상 자료를 주는 것이 원칙) 그는 이렇게 제공 받은 자료를 USB에 담아 대출광고업자에게 팔았다. 비용 절감을 위해 아웃소싱을 하기도 용역업체 직원이나 계약직 직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였다. 이 사건으로 카드3사는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되고,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여러 임직원이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부정부패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가장 먼저 배제되어야 할 부정부패가 협력사나 재하청에 의해 우리 기업을 쪼먹는다면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서는 이보다 더 불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까르푸의 뇌물 제공은 중국의 문제

2006년, 까르푸가 중국 사업망을 넓히는 과정에서 공급상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한 인사는 '단순히 까르푸의 본사의 관리 체계나 해이의 문제는 아니며, 빠른 속도로 사업망을 확대하면서 본사의 감독과 제어능력이 떨어진 틈에 중국의 고질적인 상업뇌물이 파고든 것'이라고 말했다. 까르푸 같은 거대 구매통로는 정부인증보다도 더 큰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공급상들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심지어 일선의 낮은 직급에게도 뇌물이 제공되니 뇌물 수수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까르푸 외에도 지멘스나 맥도날드 등 여러 다국적 기업에게도 해당되어 모두 홍콩 염정공서(ICAC)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제3자 리스크는 그 범위가 광대하여 기업에서도 규제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렇다 해도 윤리경영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없다면, 제3자에 의한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소홀해지기 쉽고, 조금만 소홀해져도 위험에 직면하는 것이 제3자 리스크이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Q & A

속지주의, 속인주의 관련

Q

- A외국기업 대표 B가 A기업이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甲(한국국적)에게 한국에서 30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A외국기업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는 외국 주재 특파원(한국국적) 乙에게 B가 외국에서 30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직무관련성이 인정됨을 전제)

A

- 한국 공무원 甲은 한국에서 접대를 받았고, 특파원 乙은 외국에서 식사 접대를 받았으나 한국인이므로 속인주의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甲과 乙은 공직자등으로서 각각 직무와 관련하여 3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제21조).
- 또한 외국인 B가 외국에서 乙에게 식사접대를 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나, 한국에서 甲에게 식사접대를 한 것은 속지주의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Q

- ○○국 재외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甲이 외국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거나, 국제기구, 외국대학 등에서 외부강의등을 하고 1시간에 500만원의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의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제8조제3항제6호),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경우 3만원 범위 안에서 식사접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
- 또한 외교관에 대해서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적용되나,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므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수수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2]).

지식
노트

상자 속 썩은 사과

답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비윤리행위를 접하고, 망설이고 흔들리다 넘어갑니다.

사과 상자 속에 썩은 사과 하나가 섞여 있다면

썩은 사과와 맞닿은 다른 사과들도 금방 썩게 되어 상자 속 사과는 모두 금방 썩게 됩니다.

비윤리적 이해관계자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의 윤리경영을 위협하는 것입니다.